

의안번호	2202298
의 퇴 인	한기호의원
회 답 일	2024.08.21.
추계번호	24D1875

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 (군간부후보생 등의 보수)	장교,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20조(군간부후보생 등의 보수)	• 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장교로 복무중인 사람이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임명되는 경우,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- 현행은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임명되는 경우, 사관후보생 봉급¹⁾을 지급받고 있음
 - 국방부에 따르면, 장교로 복무중인 사람이 군간부후보생 과정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항공 준사관 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임
 - 개정안에 따라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임명되는 경우,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, 1인당 매월 200~260

1) 「공무원보수규정」 [별표 13] 군인의 봉급표에 따르면, 사관생도 봉급은 1학년 1,012,500원, 2학년 1,125,000원, 3학년 1,250,000원, 4학년 1,375,000원임

만원 정도 추가재정소요 발생

[표 1] 군간부후보생 임명 시, 월평균보수액 변화

(단위: 원)

연도	준사관·부사관 ⇒ 항공 준사관 후보생과정				현역장교 ⇒ 항공 준사관 후보생과정			
	인원	임명 전	임명 후	차이	인원	임명 전	임명 후	차이
2019	9명	2,803,453	2,803,453	0	—	—	—	—
2020	9명	3,014,832	3,014,832	0	—	—	—	—
2021	11명	2,409,739	2,409,739	0	—	—	—	—
2022	6명	3,218,039	3,218,039	0	3명	3,583,190	1,014,400	2,568,790
2023	9명	2,836,298	2,836,298	0	2명	3,347,770	1,285,000	2,062,770

주: 현역장교에서 항공준사관 후보생과정으로 임명후 월평균보수액에는 항공수당 185,000원이 포함되어 있음

자료: 국방부

- 다만, 장교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임명되는 사례가 1년에 2~3명으로 많지 않고, 교육기간이 7~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,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5,000~6,000만원 수준임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장교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임명될 때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5,000~6,000만원 수준으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